

2015 정기세미나 종합보고서

[일시]

2015. 8. 20. (목) ~ 8. 21. (금)

[장소]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목 차

□ 위원장 인사말	1
□ 행사 개요	4
□ [발제]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I. 언론환경의 변화와 법제도 변화의 필요성	7
II.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의 성과	9
1. 언론중재법의 제정, 시행의 경과	9
2.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10
3. 언론중재법 시행의 성과	11
III.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2
1. 인터넷매체에 대한 규율 미흡	12
2. 시사보도와 사실적 주장 이외의 표현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의 결여	15
3. 불법적 댓글 등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이외의 피해구제수단 결여	17
4. 매체별 분리 대응에 따른 일회적·유기적 분쟁 해결의 곤란	18
5. 임시삭제, 취급중지, 접근차단 등 임시적 구제장치의 결여	20
IV.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방향	23
1. 인터넷매체에 대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 확대	23
2. 사실적 주장의 보도 이외의 표현행위에 의한 피해의 구제	27
3. 정정·반론·추후 보도, 손해배상 외의 구제수단 확대	28
4. 일회적·유기적 피해구제절차의 마련	32
5. 언론중재위원회의 ADR 기능 강화	33
□ 토 론	
I. 지정토론	37
구분권 / 기사삭제청구권 도입에 관하여	37
김경환 / 디지털·포스트휴먼 시대의 바람직한 언론중재제도의 정립	41
김동규 /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을 기대하며	46
유봉석 / 지정토론문	49
윤성옥 / 지정토론문	52
II. 종합토론	55

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용상입니다.

오늘은 칠월칠석입니다. 예로부터 좋은 만남이 있다고 여겨지는 날입니다. 3년 뒤 세계인이 모여 겨울축제를 펼치게 될 이곳 평창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2005년 정기간행물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당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던 인터넷신문이 조정대상이 되었고,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 외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인터넷이용자들의 뉴스소비행태를 반영하여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가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걸맞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지금, 언론중재제도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시대로 넘어오면서 언론피해의 양상 또한 복잡다단 해졌습니다. 온라인매체의 침해적 보도가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공간을 통해 퍼 날라짐으로써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시대의 급격한 미디어환경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상의 위법한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권이나 접근차단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설사 오보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문제의

기사가 인터넷공간에 여전히 존속하는 한 피해자의 인격권은 계속해서 침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우리 대법원도 지난 2013년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위법한 보도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보도의 복제·전파물이나 댓글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정을 통해 원기사가 삭제되거나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블로그나 카페, SNS 등에 게시된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이 함께 구제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법한 보도에 딸린 침해적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보도의 위법성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댓글의 위법성은 다른 기관에서 심리하게 된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색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구제입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위법한 침해적 기사 또는 그 복제·전파물이 계속 검색된다면 법적 절차에서 행해진 구제의 효과는 무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현행 언론중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체개념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뉴스플랫폼들의 출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였던 소셜미디어도 유력한 뉴스유통창구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뉴스플랫폼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크레이션서비스’나 ‘팟캐스트’, ‘인터넷방송’과 같은 신생플랫폼들이 뉴스를 유통하는 한 인격권에 대한 침해도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지할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행 10주년을 맞는 언론중재제도는 디지털시대의 미디어환경 변화에 알맞도록 새롭게 변화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현재 언론중재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사법연수원 양경승 부장판사님과 토론에 나서 주신 한겨레신문사 사람과디지털연구소 구본권 소장님,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님,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김동규 원장님,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 유봉석 센터장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윤성옥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박성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언론중재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8월 20일

위원장 박 용 상

행 사 개 요

■ 발 제

- **대주제** :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발제자** :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 / 부장판사)

■ 토 론

- 사회자

박성희 (중재위원 /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 지정토론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동규 (중재위원 /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원장)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 종합토론

주 제 발 표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양 경 승

사법연수원 교수 / 부장판사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양 경 승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I. 언론환경의 변화와 법제도 변화의 필요성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인격적 활동이자 사회적 활동이다. 표현행위를 직업적으로 영위하는 저널리스트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의사소통과 정보교류는 인격의 완성과 공동체적 사회생활의 유지, 민주국가의 운영에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이유로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및 그 자유를 포함한 표현행위 일반에 대하여 이를 기본적 인권으로 확인·보호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런 표현행위나 언론활동은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보전달 기술의 제약으로 인해 직업적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인 매스 미디어에 의해 영위되어 왔고, 그로 인한 법익의 침해 역시 비교적 소규모로서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과장, 부정확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그 피해의 구제수단 역시 금전적 회복수단인 손해배상과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원상회복조치로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라는 장치가 수용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한 1981년 이후 지난 30여 년에 걸쳐 우리의 언론책임법 영역에 새로운 구제수단인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이 도입되고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가 실현되었다. 이는 산업화의 완성, 민주화와 인권신장, 이에 발맞춘 매스 미디어와 정보 유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우리의 언론책임법과 언론윤리가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밀어닥친 정보화의 물결과 함께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 변화, 이른바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우리 사회와 언론환경은 이전과는 또 다른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보전달 수단인 매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정보 유통량도 급팽창하였고, 과거의 일회적·

일방향적 정보의 유통이 상시적·쌍방향적 유통으로 정보 유통의 양상이 변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실현한 한편, 복제, 퍼나르기, 링크, 실시간 채팅, 다면적 대화공간에의 참여와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한 댓글의 게재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방법으로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대·전파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인간의 삶에 스마트 기술의 편익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명예훼손, 모욕, 욕설, 비방, 사생활이나 비밀의 부당한 노출이나 침해, 음란물의 무제한적 파급,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등 개인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 당사자의 자살,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단절, 인격파괴 등은 물론 사회윤리나 성도덕의 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저해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심각한 양상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 같은 언론환경과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적·사회적 법익은 물론 국가적 법익을 보호·구제하여, 표현행위와 정보의 유통·교류가 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도록 다각도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작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곧 표현할 자유로서 검열이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후의 제한과 사회적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권 및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등의 법익 또한 인격권의 한 부분을 이루며, 피해자의 인격권과 재산권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등 다른 법익의 조화로운 절충과 보호가 모색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1996. 6. 13. 선고 94헌바20 결정 등 참조).

법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행동지침이자 판단규범이므로, 사회구조와 삶의 환경 변화로 인간관계가 변모함에 따라 법도 변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분쟁의 해결이나 피해의 구제 기능이 전통적으로 손해배상과 형사벌, 그리고 사법부의 권한과 책임에 맡겨져 왔던 것에도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행정권이나 준사법적 행정기관 및 ADR 절차에 의한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 기능의 확대는 20세기 후반 이후 복지사회·국가화의 전개와 함께 일어난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우리에게도 언론활동이나 표현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이나 피해구제에 있어 언론중재법의 보완

을 통한 새로운 구제수단과 절차의 개발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변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 언론책임법의 중심을 이루는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을 맞아 그 성과를 간략히 돌아보고, 변화하는 언론환경과 정보화의 전개에 따른 현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의 성과

1. 언론중재법의 제정, 시행의 경과

(1)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2005. 1. 27.에 공포되어 그해 7. 28.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셈이다. 이 법은 한 차례의 헌법심사를 통해 2009. 2. 26.에 일부 규정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1980. 12. 31.에 공포·시행된 언론기본법에 연원을 두고 있다.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제수단으로서 불법행위책임과 절연된 반론보도청구권이 도입되고 ADR 기구로서 1981. 3. 31.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하였다. 1987. 11. 언론기본법에 대체하여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이 제정되었는데 제도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1995. 12. 위 두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의미했던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수정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직권조정결정 권한이 부여되었다. 한편 1997. 11. 공직선거법에도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권이 도입되었다.

(3)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및 그 뒤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 등의 피해구제 장치는 동일·유사한 내용을 매체별로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데에다, 그 구제수단이 전통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반론보도청구권 하나뿐이었고 그 구제절차 역시 조정뿐이어서, 증가하는 매체와 정보량에 비해 신속하고 충실한 피해의 구제를 담보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적·유기적 피해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논이 모아진 결과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1998. 4. 언론중재법의 골간이 성안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2005. 1. 피해구제에 관한 통합법으로서 언론중재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2.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1) 언론중재법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종래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외에, 종래 민법 제764조에 바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한계를 안고 있었고,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 본인 명의로 인한 반박적 보도에 그쳐 진실하지 못한 정보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었던 한계를 지양하기 위해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도입하였다. 이 역시 반론보도청구권과 같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전혀 요건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인격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어 이를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문화하였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학설·판례상 인정되어 왔던 침해의 정지·예방과 침해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내지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조화·절충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새로 도입한 고충처리인(옴부즈맨) 제도 역시, 언론사로 하여금 자율적 수단에 의하여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언론중재법은 피해구제 절차로서 법원의 소송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의 ADR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종래의 조정 외에 고유 의미의, 즉 중재법상의 중재절차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종래와 달리 임의적 전치절차로 변경하였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 외에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분쟁도 조정,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직권조정결정에 대한이의 제기 시 자동적으로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의 편리와 구제절차의 신속을 도모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사회적 법익이나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기능은 종래와 같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의 병합과 소송 중 청구의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의 소송에 관하여도 변론을 열어 판결에 의해 재판을 하도록 하면서도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입증 부담의 완화와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였다.

(3)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언론의 발달에 주목하여 인터넷신문을 그 적용 대상 매체로 편입하였으며, 2009. 2.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까지 이를 확대하였다.

3. 언론중재법 시행의 성과

(1) 언론기본법의 시행과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족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언론법, 특히 언론책임법의 영역에서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 다양한 언론매체의 등장, 정보 유통량과 보도량의 팽창 등으로 그에 따른 법의 침해와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새로운 구제수단과 전담기구의 마련으로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다.

(2) 현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이 주축이 되어 구제하고 있고, 보조적으로 인터넷 공간이나 통신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지난 30여 년간 우리의 언론환경은 양적 팽창 못지않게 다양한 법리와 판례의 연구·발전 등 질적인 성장 역시 현저하였다. 특히 언론책임의 법리와 언론윤리의 조사·연구 및 조정·중재를 통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여는 더욱 주목된다.

(3)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족 당시 연간 44건이던 구제신청 건수는 1990년대 들어 100건대를 넘어 500~600건대에 달하였고,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더욱 증가하여 2006년에는 1,000건을 상회하였으며, 2010년 이후 현재까지는 연간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조정절차를 임의적 전치절차로 변경하였음에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며,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제소되는 사건의 비율은 연간 전체 언론 관련 소송사건의 80% 내외로 확인되고 있다.¹⁾

한편, 어떤 형태로든 구제신청인이 언론중재절차를 통해 만족을 얻는 신청효율이 초창기에는 30%대였으나 그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근래에는 평균 70%대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언론중재법으로 제도가 신설된 중재 건수도 2006년의 7건에서 근래에는 연간 50건에서 1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처리된 전체 중재사건 중 기각과 취하의 합계 비율이 1.7%에 불과할 만큼 구제효율이 매우 높다. 직권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율을 보면, 2008년 이래 최근 7년 동안 동의율이 60%대이며, 조정 불성립결정 사건의 비율은 전체 신청사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

2013년의 경우 전체 조정신청 사건(2,433건)의 대상 매체별 비중을 보면,²⁾ 인터넷

1) 그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36면 참조.

2) 2014년의 경우 세월호 사고로 인한 특정 종교 관련자의 신청이 쇄도하여 조정신청 건수가 무려 19,048건에 이르렀으며, 2015년 상반기에도 벌써 3,584건이 접수될 만큼 증가세가 현저하다.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4년 통신 관련 심의건수는 140,421건, 그 소속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신청 건수는 68건이다.

신문, 일반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일반방송, 주간신문, 뉴스통신, 종편방송, 유선방송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 바, 앞으로 인터넷매체의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인터넷매체에 대한 규율 미흡

(1) 언론중재법에 의해 구제 대상이 되는 이른바 ‘언론보도’는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도활동, 즉 우리가 전통적으로 ‘언론’으로 이해하여 왔던 프로페셔널 저널리즘(Professional Journalism)이다. 이러한 언론활동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일정 규모의 조직성을 갖춘 직업적 언론인과 언론기관(매스 미디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어 그 특별한 구제수단인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이 같은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법상의 조정,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 침해적 정보가 이 같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다른 매체의 매개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제한되며, 그 정보는 자연히 보도활동의 결과에 의한 것이 된다.

이는 언론중재법의 법문 여러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①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② ““언론”이란 방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제2조 제1호), ③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언론등”)은 타인의 생명·자유 …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인격권”)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④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언론보도등”)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제7조 제1항), 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 본문), ⑥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8조 제1, 2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의 중심적 적용 대상은 ‘언론’, ‘언론사’, ‘언론보도’임을 알 수 있다.

(2) 결과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 내지 기본적 관심은 표현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있고, 그 표현행위에 따른 피해는 보도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인 언론과 보도기관인 매스 미디어에 의해 발생하며,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외에 정정과 반론, 추후보도가 실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 언론매체 외에 인터넷신문이 추가되었으나 이 역시 그 전파수단이 인터넷이라는 점 외에는 그 기능과 역할, 운영주체 등이 종이신문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그런 이유로 이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 헌법과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1980년대에는 아직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으로 서, 매스 미디어의 직업적 보도활동 내지는 그 주체인 언론기관이 표현행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였고, 그와 연관지어 ‘언론’의 의미나 ‘언론의 자유’를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였다. 또 언론중재법이 제정·시행된 2005년 초만 해도,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정보의 편면적 제공이라는 특성의 기존 언론과 달리, 그것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등의 전통적 언론매체와 구별되는 통신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과거의 언론기본법이나 정기간행물법 등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도 전통적 언론매체인 매스 미디어를 적용 대상의 중심으로 포착하였으며, 추가된 인터넷신문 역시 그 아류로 이해되었던 것이다.³⁾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조류에 따라 인터넷 기술과 통신환경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면서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이 기존의 언론매체와 결합하거나 그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였는데,⁴⁾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은 2009. 2.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그 적용 대상에 편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같은 적용 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중재법의 중심적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시사적 뉴스의 보도활동을 중심역할로 하는 전통적 언론매체이며,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역시 그러한 보도활동을 하거나 다른 언론

3)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신문법 제2조 제2호).

4) 전통적 언론매체보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준 매스 미디어에 의해 뉴스를 취득하는 인구가 이미 다수가 되었으며, 계속 그 비중이 증가함에 반비례하여 전통적 언론매체의 영역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매체의 보도를 매개하는 작용을 하는 매체로서 준 매스 미디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⁵⁾

(3) 그러나 기술의 변화·발전으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 언론기관은 물론 준 매스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외에도 1인 인터넷방송 등 언론중재법상의 매체가 아니면서 인터넷과 전기통신망을 이용해 시사적 정보를 전파·보도하는 매체나 인터넷 공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의한 법익의 침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⁶⁾

그럼에도 언론중재법은 전통적 보도매체와 그 일부 매개적 매체만을 적용 대상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대상 매체가 아닌 인터넷홈페이지나 블로그, 게시판, 토론방, 대화방, SNS 공간, 방송⁷⁾을 통해 유통되는 댓글 및 복제·전파물 등의 침해적 정보에 대하여는 언론중재법상의 구제를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물론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상의 침해적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구체적 구제수단과 절차가 상이한 부조화를 피할 수 없고,⁸⁾ 또 침해적 정보가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매체와 적용 대상이 아닌 매체에 동시에 유통·전파된 경우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상이한 법이 적용되는 혼란과 피해자가 각각의 구제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신문법 제2조 제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장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2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이에 따라 2009. 2.에 개정된 언론중재법 제1조 등은 그 적용 대상을 종래의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 …”에서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 …”으로 확장하였다.

6) 특히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공간에의 접속과 그로부터의 정보 취득 비중이 매우 높다. 구글의 최근 ‘권슈머 바로미터’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온라인에 매일 접속하는 인구 비율이 세계 1위인 97%이고,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정보를 찾는 인구 비율 역시 세계 1위인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20-30대 청년층의 뉴스 이용시간에서 인터넷은 이미 TV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미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서, 미국의 경우 이미 2013년에 전체 뉴스 이용자 중 인터넷에 의한 뉴스 취득이 TV를 앞질렀으며 영국에서도 최근 양자의 비중이 역전되고 있다.

한편 2014년 한 해 전국 법원에 제기된 언론보도 피해구제소송 284건 중 46.1%가 인터넷매체였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건수가 2004년 8만2,000여 건에서 2007년에는 19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명예훼손 범죄행위 역시 같은 기간 3,600여 건에서 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다.

7) 일정한 인력과 시설 규모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체라디오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 개인 인터넷방송(아프리카TV 등)은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3호, 방송법 제2조 제3, 4, 7, 10호 참조).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방송사가 제공한 주식정보를 토대로 주식투자를 해온 피해자가 방송사의 근거 없는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 대하여, 그 방송사가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자본시장법상의 고객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이러한 피해 역시 현재는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8) 이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상의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가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충분히 구제될 수 있을지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인터넷 공간 등 통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은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 5인)와 명예훼손분쟁조정부(위원 5인)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그 대상 건수에 비해 조직 규모가 너무 작아 사무국 중심의 운영으로 호를 우려가 있고 충실한 심의·조정을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미 정보의 유통·전달에 있어 그 중심축이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로 변하였고 법익 침해 역시 그 공간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보도활동 중심의 전통적 언론매체에 초점을 맞춘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시사보도와 사실적 주장 이외의 표현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의 결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은 인격적 법익의 침해가 주로 언론의 보도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것에 주목하여 동법의 적용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보도에 집중시키고 있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모두 사실적 주장의 보도를 전제로 하며(언론중재법 제14, 16, 17조 각 제1항), 이에 관한 조정과 중재 역시 위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에 관한 분쟁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모두 사실적 주장의 보도를 전제로 한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1, 2항, 제24조 제1항).

보도는 교양, 연예, 오락, 드라마, 게임, 스포츠 등에 대비되는 개념의 언론활동으로서, 새로운 것에 관한 정보, 즉 뉴스를 유통·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새로운 정보(뉴스)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말하므로 보도는 결국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논평이나 해설, 가십 등과 같은 가치판단적 또는 의견표명적 기사 역시 이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⁹⁾

이로 인해 보도활동이 아닌 교양, 연예, 취미, 오락, 스포츠, 선교, 상품판매 등의 표현행위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익 침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담기지 않은 사생활 노출이나 비밀누설, 저작권침해 등의 표현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언론중재법상의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¹⁰⁾

(2)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기본 취지는, 전통적으로 명예와 신용을 인격적 법익의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인격권의 실정법적 권리화 이전부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손 경우의 특칙으로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민사상 구제수단으로서 인정

9) 언론중재법은 ①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제2조 제15호), ②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제2조 제14호)고 규정하고 있고(그러나 ‘보도’의 의미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방송법도 같은 견지에서 ①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8호), ②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4호)고 규정하고 있다.

10) 물론 교양, 연예, 스포츠 등 ‘보도’ 부문 외의 표현행위라도 사실적 주장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언론중재법이 동법의 적용 대상을 ‘언론보도’라고 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고(민법 제764조), 형사적으로는 모욕과 함께 명예와 신용의 훼손을 범죄행위로서 처벌하는 것(형법 제309조 내지 제313조)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사고를 토대로 하면, 명예와 신용의 훼손은 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보도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고,¹¹⁾ 그 보도활동은 대부분 직업적 언론활동의 주체인 매스 미디어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 방송, 통신, 정기간행물 등 전통적 언론매체의 사실적 보도가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의 중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3) 그러나 보도활동 이외의 표현행위에 의해서도 인격적 법익이나 재산적 법익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사실적 주장에 의하지 않은 표현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도 사실적 주장에 의한 그것 못지않게 발생한다.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고 하는 모욕(욕설, 비방)이나 사생활 영역의 부당한 공개, 법익 주체의 동의 없는 음성·얼굴·신체·비밀 등의 부당한 노출, 표절행위, 법익 주체의 동의나 그와의 약속을 벗어난 사적 정보의 부당한 이용, 협박이나 공갈, 기타 해악을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나 음란정보, 성적 희롱에 해당하는 정보 등에 의해서도 법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래 욕설 댓글이나 해악을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나 음란정보, 성적 희롱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형태의 법익 침해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는 전통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등에 의하여서는 불가능하거나 완전하지 않으며 당해 정보의 삭제나 제거, 접근차단 등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물론 언론중재법에서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침해의 정지·예방청구권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권리를 확인하고 있고(제30, 31조), 보도나 사실관계의 적시 외의 방법에 의한 법익 침해도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해서는 침해적 정보 모두의 제거 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언론중재법상의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법문상 불분명하다.

11)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사회적 평판이나 그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그의 인격적 가치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격적 가치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욕죄와 구별된다.

3. 불법적 댓글 등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이외의 피해구제수단 결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과 언론중재법에 의한 피해구제수단은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외에는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 및 반론보도청구권의 일종인 추후보도청구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과거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법익의 침해가 대부분 언론의 사실적 보도에 의해 초래되었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도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이러한 구제수단만으로는 법익 침해를 완전하게 구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욕설, 비방 등의 모욕행위나 사생활, 음성, 얼굴, 신체, 비밀 등의 부당한 노출이나 공개, 헐박·공갈 등의 범죄적 정보, 음란정보나 성적 희롱에 해당하는 정보 등 사실적 주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보에 의한 침해행위는 물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정보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반론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에 의해서는 사회적으로 존속가치가 없는 침해적 정보로부터 야기되는 피해의 구제를 기대할 수 없다. 또, 손해배상은 정신적·경제적 회복만을 담보하고,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역시 이미 침해된 명예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계속되는 침해상태의 제거나 장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

(3) 특히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등의 전통적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는 1회적으로 발생하고 그 보도의 결과가 독자나 시청자의 기억 속에 존재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가 소멸하거나 감소하는 성질을 띠는 데 반해, 댓글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침해행위는 그 침해상태가 존속하여 언제 어느 때나 이를 재생하거나 새롭게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공간으로의 전파·파생이 쉬워 그 침해상태를 근본적으로 제거·차단하지 않고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성질을 띤다.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정정·반론보도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는 그 제거·차단이 불가능하며,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해서는 위법성이 없는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삭제나 제거, 그 표현물의 폐기, 접근차단이나 검색차단 등의 다른 구제수단이 필요하다.

(4) 물론 언론중재법은 인격권에 대한 침해의 구제수단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제30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게 침해의 정지와 침해의 예방 및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

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30조 제3, 4항, 제31조).

그러나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제거, 접근차단 등을 구할 권리 등도 허용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고,¹²⁾ 무엇보다 이는 위 법규의 문리적 해석상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 언론중재법 제18조나 제24조의 해석상 이러한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도 조정·중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¹³⁾

한편,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도 인터넷 공간상의 침해정보의 취급 거부나 정지, 기사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언론중재법에 의한 구제절차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5) 침해적 정보의 삭제나 제거, 그 표현물의 폐기, 접근차단이나 검색차단 등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때는 이와 더불어 작금 세계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배려와 공적 인물이나 공공기관,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정치적 권리나 표현의 자유의 차원에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접근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상대방인 표현행위를 한 자 등을 위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 등 당해 절차 내에서의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 일반의 구제절차에 맡기거나 사후적 이의제기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¹⁴⁾

4. 매체별 분리 대응에 따른 일회적·유기적 분쟁 해결의 곤란

(1)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언론매체와 그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매체

12) 법문상의 ‘침해의 정지와 침해의 예방 및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권리’는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독립한 삭제나 접근차단 등을 구할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종래 인정되어 왔던 사법판단에 의한 사전금지로서의 보도·배포·방송 금지 가처분 등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13)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그 통계자료의 분류·작성 시 구제의 유형을 ① 정정보도, ② 반론보도, ③ 추후보도, ④ 손해배상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기사의 삭제나 접근차단 등 위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구제의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 유형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1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반 행정쟁송절차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표현행위자가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쟁송으로 다투는 경우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근래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상품이나 기업, 단체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의 기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한겨레신문 2015. 7. 15.자 16면 참조)는 경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에 동일·유사한 내용의 침해적 정보가 유통·전파되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일회적·유기적 피해구제나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 적용 법령이 다르고 담당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유사한 내용의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그 매체가 다를 경우 그 근거법이 언론중재법과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등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따라 구제수단과 절차가 다르게 되어 통일적인 피해구제를 기하기 어렵다. 물론 이에 따른 불편이나 구제의 미흡은 각각의 매체가 가진 다른 성질, 규모나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소산이므로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개선점을 최대한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언론중재법은 과거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뉴스통신진흥법 등 매체별로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피해구제 장치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그 적용 대상 매체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구제수단과 구제절차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분쟁의 일회적·유기적 해결과 피해구제의 신속·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언론매체가 보도·취급한 기사가 댓글이나 퍼나르기, 링크 등의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여러 매체 등 정보 저장장치에 전파·저장되어 그로 인해 침해가 계속·확대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행 언론중재 등 피해구제 제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의 구제요청은 각 매체(언론사 등)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떤 정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 유통·전파된 경우 그 중 일부 매체에 대해서만 구제요청이 있어 그에 따른 화해·조정·판결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구제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매체의 정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방치된다. 또 피해자가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희망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전달 매체가 다름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달라져 구제수단과 구제절차 역시 다르게 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가 관여하지 못하거나 그 구제 결과가 상이하게 되고, 그 매체별로 피해자가 일일이 따로 따로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과 손해가 불가피하다.

물론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가 있으면 당해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도 피해자의 구제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그 언론사등은 피해자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의 결과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의2). 그러나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가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동일한 구제조치를

하도록 의무지우는 규정이 없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제소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해당 매체를 특정하여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그러므로 관련 분쟁이나 피해가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하나의 구제절차를 통해 일회적·유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이와 더불어 원 정보에 대하여 이미 정정이나 반론 등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부터 파생된 동일·유사한 정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판단이나 조정 등을 거칠 필요가 없이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는 이에 관한 고려가 없으므로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4) 한편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보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매체를 대상으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구제수단으로 마련하고 있으면서도,¹⁵⁾ 공직선거법은 이를 과거와 같이 방송,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 인터넷언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구제기관과 구제절차를 달리하고 있어 시간과 절차의 불필요한 중복으로 피해구제에 큰 불편과 장애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¹⁶⁾

5. 임시삭제, 취급중지, 접근차단 등 임시적 구제장치의 결여

(1) 어떤 보도나 표현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법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일견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도 피해자와 상대방인 표현행위자의 대립하는 법익의 비교형량을 하거나, 피해자와 상대방 사이에 화해, 조정, 중재, 판결 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때로는 당해 기사의 게시자 등 표현행위자를 파악하고 그를 구제절차에 출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거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2) 그러나 표현행위의 내용이나 그 피해자의 연령, 성별, 심리상태, 주변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즉시 그 정보나 표현물에 대한 임시삭제나 취급중지, 접근

15) 사과문의 게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선언을 한 바 있음에도(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공직선거법은 정정보도와 반론제도 외에 사과문의 게재를 구제수단으로 규정하였는 바(제8조의3 제3항),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위헌선언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가8 결정).

16) 인터넷신문의 경우 대부분 오프라인 신문사가 발행하는 등으로 그 경영 형태와 보도내용이 오프라인 신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소관이 아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다. 선거보도의 심의와 관련한 문제점은 이승선,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언론중재 32권 2호(2012)를 참조.

차단 등 침해의 계속이나 확대·전파의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감내하기 어렵거나 장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임시적 구제수단이 필요한 바, 현재 이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법이 인정된다. 첫째는,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구한 경우에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둘째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해 피해자가 법원에 임시삭제나 접근차단 등의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전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피해구제에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¹⁷⁾ 후자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한계이다.

(3) 위와 같은 한계를 고려한다면 구제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임시적 구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관련하여 분쟁 사건이 조정절차나 중재절차에 계속 중인 경우의 임시적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침해적 정보가 일회적 전파에 그치고 계속해서 일반에 노출되지 않는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침해적 정보가 계속 일반에 노출되는 인터넷매체의 경우에는 그 침해상태의 계속성, 반복성, 확대·전파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4)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표현행위에 대한 간여가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그것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즉, 그 제한·간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관한 것이고, 표현행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아니며 침해의 최소성과 비례성, 충돌하는 법익 상호간의 균형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또, 그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사인간의 분쟁 해결은 기본적으로 사법권에 속한다는 국가기

17) 최근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와 임시적 접근차단 등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이익만 있으면 너무 쉽게 접근차단조치를 취하고 30일 내에 상대방의 이익제기가 없으면 영구삭제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관 상호간의 권한 배분의 원리에도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¹⁸⁾

이에 관하여 상론할 수는 없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한 표현행위의 사후적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몇 가지 근거를 들자면, ① 우선 표현행위 등 언론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이 역시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검열의 성질을 띤 사전금지가 아닌 사후적 제한은 헌법 스스로 허용하고 있고(헌법 제21조 제4항), ② 사전금지의 경우에도 행정권의 자의적 검열이 아닌 독립규제위원회나 사법권에 의한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금지, 제한이 허용되고 있으며, ③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표명 등 정당한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불공정·부진실한 정보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타인의 정당한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적 정보에 대한 사후적 제한은 법익의 균형상 허용되어야 하며, ④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부속기구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은 합의제 관청으로서, 그 구성원이 행정부나 행정관청의 단독적 의사에 의해 임명·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등이나 정당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추천에 의해 충원되고, 정당의 구성원이거나 현직 언론 종사자 등은 배제되며, 그 업무 처리에 행정권력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등으로 정치적·업무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고, ⑤ 사법심사의 전심절차로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이 헌법상 허용되고 있으며(제107조 제3항),¹⁹⁾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거나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조정·중재 절차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임시적 삭제나 접근차단 등의 임시적 구제조치를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²⁰⁾

18) 이미 관계 법률은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일정 부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문 등의 게재를 명하거나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언론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하는 것이다. 이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8조의4 제3항, 제256조 제2항 제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시정요구에 의해 정정, 수정,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며, 그 불이행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형사제재가 따른다(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 6항, 제256조 제2항 제3호,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 이외의 방송 내용이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직권으로 이를 심사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취급의 거부나 정지,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나 이용해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73조).

19) 물론 순수한 의미의 행정심판은 당사자의 한쪽이 행정청인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나, 현대 복지국가의 경우 행정기관이 사인 간의 분쟁이나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에 관여하여 피해 구제나 심판기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바, 이것도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IV.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방향

1. 인터넷매체에 대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 확대

(1) 오늘날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의 유통·전파가 신문, 방송 등 기존 언론매체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고, 인터넷 공간은 전통적 언론매체와 달리 기사(정보)의 제공·작성자과 그것의 전달·유포자인 매체(platform)가 분리됨으로써, 정보의 작성·전파 과정에서 자기규제나 자기통제를 통한 법익 침해의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후 책임 추궁에 있어서도 양자의 법적 책임이 모호하여 일원적인 책임귀속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¹⁾ 이와 같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값싸게 정보를 작성·전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정보 유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책임 추궁과 피해구제는 곤란한 현실상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전파되는 침해적 정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할 때는 각각의 공간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터넷 공간을 유형적으로 크게 나뉘보면, ① 전자우편(e-mail)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카카오톡, 틱톡, 구글토크, 네이트온, 라인 등), 채팅방 등의 일대일 또는

20)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삭제나 임시적 접근차단, 영구삭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임의적 삭제 등을 금하고 언론중재위원회 등 공적 기관의 판단에 이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에 의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이나 방송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명령 등은 언론사 등 표현행위자의 권리를 사법심사에 의하지 않고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이나 제한의 비례성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으므로(종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도 증거가 아닌 소명에 의하는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으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소명만으로 인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언론사로서는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확보하지 못하는 한, 사실주장에 관한 보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기사의 삭제나 접근차단 등의 소극적·간접적 제한을 초과하여 적극적·직접적 제한인 정정보도까지 명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전달매체의 침해적 정보 제거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일대다(一對多) 커뮤니케이션 공간, ② 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공간이나 기사댓글란과 같은 게시판(bulletin board) 또는 토론방, 카페, 블로그 등의 공개광장(public forum), ③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과 같은 이른바 전자언론, ④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정보를 수령하는 학교, 기업, 관공서, 개인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싸이월드 등)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언론중재법에 의한 특별한 구제수단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그 대상 정보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보도활동의 결과로서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과 공개성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상의 구제절차인 조정·중재는 준사법적 절차로서 거기에도 상당한 시일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듯 종래의 언론중재제도는 보도활동을 주로 하는 매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고 그 매개기능을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전달매체를 보조적으로 흡수하여,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제한된 범위의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장치로서 기능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도활동을 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지 않는 매체는 이 제도 바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기사의 작성·게시자와 전달매체인 플랫폼의 기능이 분리된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전파되는 정보의 많은 부분이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위와 같이 인터넷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확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모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경우 조정·중재라는 준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제도의 특성상 업무량이 폭증하여 보다 중요한 사건을 제때에 처리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 경계도 모호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인터넷 공간을 확대하고자 할 때는 그 공간의 접근성, 공개성, 저장된 정보의 계속성과 확대·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인터넷 공간에 대한 적용 확대의 1차적 기준은 그 인터넷 공간이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등 전통적 언론매체나 그에 준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같이 계속적으로 보도활동 또는 그 매개활동을 통해 여론의 형성·전파 기능을 하는 것이거나, 그 인터넷 공간에 유통·전파된 침해적 정보가 위와 같은 전통적 언론매체로부터 전래·파생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①과 같이 일대일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 다수인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통신기능적 공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④와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정보교류를 허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변이나 개인적 또는 그 운영 주체의 업무와 관련한 제한된 정보만을 교류·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정보의 전파와 교류를 통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 기능을 하기보다는 통신 기능을 하며, 그에 따라 법익 침해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 침해의 규모나 파급력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방송 등과 같이,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외한 ②와 ③의 인터넷 공간은 이들 인터넷매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때 그 방법으로는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방법과 대통령령이나 언론중재위원회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언론사’라는 개념으로 “인터넷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포괄하여 그 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제8조의5 제1항), 이는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 공간(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보다 넓은 것으로서²²⁾ 전자의 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²³⁾

(4) 한편, 위와 같이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할 위 ②와 ③의 인터넷 공간 외의 공간에도 침해적 정보가 매우 많고, 그것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 매체로부터 유통·전파된 것인 때는 그에 대해서까지 일회적·유기적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

22) 근래 인터넷을 통한 뉴스 취득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기존 언론사들도 자체 인터넷매체를 통하거나 외부 인터넷매체를 통한 뉴스 공급 비중을 높여 가고 있는 현실상 보도활동 중심의 전통적 언론기능을 종래와 같이 오프라인매체에만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의 경우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뉴스채널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거의 모든 방송사가 인터넷을 통해 자체 방송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프리카TV 외에 MBC(마이 리틀 텔레비전), 네이버(네이버 브이) 등이 개인 인터넷방송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TV 역시 가수 윤종신과 합작으로 개인 인터넷방송 창작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 인터넷방송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언론중재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이들에 대하여도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23) 공직선거법은 이와 같이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속기구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심의 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결정 등)에 따라 심의 대상 인터넷언론사를 내부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이런 방식을 취하면 그 적용 범위가 대내외적으로 명확해져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터넷 공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검색기술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정보 역시 별다른 장애나 큰 노력 없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이미 이루어진 구제조치가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확대 적용할 인터넷 공간을 포함하여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언론매체에 유통·전파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이를 원천으로 하여 변경·가공하거나 이를 전제로 그에 대해 댓글이나 기타 의견을 달게 하는 등으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언론매체의 정보가 다른 인터넷 공간에 전파·유통되어 그 정보가 당해 인터넷 공간에 존속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한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게시판과 같이 위 ②에 해당하는 인터넷 공간 중 기사댓글란의 경우, 표현행위의 주체인 댓글 작자가 따로 있음에도 그 전달 매체인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기사댓글이 존재하는 인터넷 공간은 앞서 언급한 언론중재법의 확대 적용 기준인 그 공간의 접근성이나 공개성, 저장된 정보의 계속성과 확대·전파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침해적 댓글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해왔고, 대법원 판례나 학설상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도 자신이 통제·관리하는 인터넷 공간에 유통·존속하는 침해적 정보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²⁴⁾

물론 침해적 댓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침해적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언론보도에 수반되는 댓글에 의한 피해구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별도로 구제신청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기관 및 구제청구절차의 상이함과 복잡함에 따른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2013. 10. 10. Delfi AS v. Estonia 사건에서, 댓글 시스템을 운영하여 독자의 댓글 게시를 허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인 원고 Delfi AS는 그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에 의해 명예훼손적 진술이 공표되는 것을 방지할 기술적인 조치, 즉 수작업을 취할 수 있으므로, 그 댓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에스토니아 법원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댓글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정보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또한 대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댓글이라도 그 전제사실이 허위사실이면 댓글 게시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 7. 15. 선고 2008도2422 판결).

따라서 위법한 댓글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침해적 언론보도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침해적 댓글에 관한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댓글이 게시된 인터넷 공간의 관리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할 것이며, 댓글 게시자의 이의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실적 주장의 보도 이외의 표현행위에 의한 피해의 구제

(1) 현재의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만이 법 적용 대상이므로,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욕설, 비방, 모욕, 사생활침해, 음성·얼굴·신체·비밀 등의 부당한 노출 등 다른 형태의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나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만이 적용된다.²⁵⁾ 따라서 그 구제수단도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이 주가 되고, 예외적으로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계속 중인 침해행위의 중지나 장래 예방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는 이와 같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으로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제18조 제1, 2항), 위와 같은 침해에 대해서는 조정·중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중재제도가 근본적으로 전통적 언론매체의 보도활동을 그 중심적 규제 대상으로 포착하고 있는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적 주장, 즉 보도활동 이외의 수단에 의한 법익 침해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법익 침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표현행위를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서 인격적 법익이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²⁶⁾

또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 이외의 표현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무용하므로,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해당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검색차단 등의 다른 구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25)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도 피해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권 또는 반박내용 게재청구권에 대하여는 사생활침해 등 사실적 주장 이외의 방법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하여도 적용되나(제44조의2 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권 심의에 의한 취급거부, 정지 등은 그 침해적 정보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제44조의7 제1항 제2호).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 대상은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 외에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명예훼손 이외의 법익 침해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조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직권 심의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한 해 동안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접수한 사건은 68건에 그치고 있다.

26) 그렇다고 하여 사실적 주장의 보도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같은 구제수단은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이기 때문이다.

3. 정정·반론·추후 보도, 손해배상 외의 구제수단 확대

(1)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아 유용한 피해구제수단이기는 하나 그 대상이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든 형태의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기는 하지만,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고 금전 배상에 의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상회복이나 현재 계속 중인 침해의 중지, 장래를 향한 침해의 예방 대책으로는 미흡한 한계가 있다.

또한 사실적 주장의 보도라도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등의 전통적 언론매체가 아닌 인터넷 공간상의 정보는 일회적 유통·전파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존속하여 확대·전파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 등이나 손해배상만으로 그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

(2) 그러므로 새로운 피해구제수단으로서 침해적 정보의 삭제청구권과 접근차단청구권을 언론중재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그 침해적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차단의 방법으로서 검색사업자에 대한 검색차단청구권²⁷⁾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리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격권 자체가 갖고 있는 절대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헌법적으로는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내포하고 있는 인격권, 제21조 제4항의 타인 법익 침해의 금지와 구제청구권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인격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 주체가 온전하게 배타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할 권리로서, 타인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그 방해를 배제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을 청구할 권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권은 그 성질상 침해가 현존하는 한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언론중재법은 피해자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한 침해의 정지나 침해의 예방,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며(제30조 제3, 4항), 정보통신망법도 피해자에게 직접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제44조의2)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침해적 정보의 취급거부나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4조의7).

한편 대법원도 “헌법 제9조 후단에서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27) 인터넷 검색장치를 통한 그 관련 정보에의 접근차단을 청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다.’라고 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어떤 개인이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 또는 타인에 의하여 부당히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사람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이러한 삭제청구권 등은 따로 개별 법령에 그 근거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과 조리상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²⁸⁾ 법이 갖는 국민에 대한 수범규범 내지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언론중재법에 이를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 4항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요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물권적 청구권과 같이 배타적 권리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청구권은 물권이나 인격권 등 그 권리 자체가 갖는 고유한 권능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역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 삭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8) 언론중재법의 미흡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현재 삭제청구나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2015서울조정2920, 2921; 2015서울조정3038, 3039 등 참조).

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하여(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제3장 제4절 소송에 관한 규정 중 ‘손해의 배상’이라는 조문에 이를 규정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 4항은 개정을 요한다. 그 방법으로는, ① 이를 침해에 대한 구제 규정인 제3장 제1절로 위치를 옮기고, ② 손해배상으로부터 독립하여 침해의 정지·예방청구권으로서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며, ③ 불법행위에 따른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로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고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음을 명정하는 것이 좋겠다.

(4) 다만, 위와 같이 삭제청구권이나 접근차단청구권 등의 행사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당해 기사나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으나,²⁹⁾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나 국가기관, 공적 인물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의 표현까지 제한하여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주사회의 원리에 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³⁰⁾

29)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인 피해자의 동의 역시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그러한 동의하에 보도·유통된 정보라도 피해자는 삭제나 접근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격권의 성질상 이러한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내지 제38조 참조).

30) 이와 관련해서는 작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잊혀질 권리’는 그 권리의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성문화된 것은 아니나, 통상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개인정보 열람청구권, 개인정보 정정청구권, 개인정보 삭제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의 보유자에게 삭제해줄 것을 청구할 권리로 이해되며, 그 정보가 침해적인지 아닌지나 정보의 보유자가 이를 합법적으로 보유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불문한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서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 및 허용 기준이 가장 문제로 되며, 특히 개인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 내지 공익의 조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어려운 과제로 떠오른다. 이 부문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EU의 경우에도 1995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 끝에 2010. 4. 그 개정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도출되고 이를 권고적 지침(directive)이 아닌 회원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regulation)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집행위원회의 입법제안을 유럽의회가 2014. 3. 12. 승인하여 향후 각료 이사회의 동의만 얻으면 발효될 예정이다).

위 개정안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personal data)가 그 수집이나 처리 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동의한 보유기간이 만료하고 더 이상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게 된 경우, 정보주체가 정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정보의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타에 전파하지 말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제17조 제1항). 그러나 정보의 처리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사적·통계적·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제17조 제3항).

다만, 위 EU의 개정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개인의 인격적 동일성에 관한 개인정보(성명, 식별번호, 주소, 인터넷 아이디 등)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그 정보주체에 관하여 과거에 발생한 일을 지우거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에 근본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위 Regulation 제4조 제1항 참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외에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한 나라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점에서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그 기본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제35조), 정정 및 삭제청구권(제36조)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분쟁 조정기구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제40조 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0, 31조 등).

따라서 그 정보가 정부나 국가기관, 공적 인물 기타 공적 관심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정보의 유지·존속이 공익이나 상대방의 법익과 비교하여 우월하거나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제나 접근차단 등을 허용하지 않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표명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양자의 법익을 조화, 절충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³¹⁾

(5) 한편 기사의 삭제청구권 등 이들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기사의 작성자나 게시자의 정당한 권리가 구제절차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즉 그 구제절차에서 기사의 작성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그 기사나 정보가 유지·존속되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피해자와 당해 기사·정보의 전파매체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나 법원의 소송절차에 이행되는 경우, 어느 경우이나 그들의 정당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기사의 유통·전파자가 피해자의 삭제청구 등을 받은 때는 기사의 작성자 등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 그의 견해를 표명하게 하고, 그의 명시적 반대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양자의 합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판단만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³²⁾ 조정·중재 절차나 소송절차에서도 그에게 당해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³³⁾

현재 공직선거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기사의 삭제나 방송중지, 접근차단 등의 구제수단을 인정하면서도 정보의 작성자나 게시자 등 표현행위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거나 미흡하다.³⁴⁾ 그러므로 이들 법령의 관련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31) 위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사(정보) 내용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해를 고려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은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위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경우와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32) 이로 인해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3) 조정·중재 절차나 소송절차에서는 그의 주장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청구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34) 공직선거법에는 아예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후 통보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제44조의2 제1, 2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를 하고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사후의 이의제기만을 허용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6조).

(6) 다음으로, 명예나 신용, 초상권,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적 법익 외에 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도 이러한 삭제청구권 등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는 바, 재산권에도 인격권과 같은 배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법익이라는 점에서는 인격권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격적 법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되,³⁵⁾ 구체적 개별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법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그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일회적·유기적 피해구제절차의 마련

(1)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은 어떤 정보가 하나의 매체만을 통해 유통·전파되는 경우는 드물고 다수의 매체를 통해 동시적·계속적으로 확대·전파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어느 매체나 인터넷 공간에 관련 정보가 유통·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 그 상대방을 일일이 지정하기도 쉽지 않다.

(2) 언론중재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그 인터넷 공간에 유통·전파된 정보(기사)의 원천 정보(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정정청구 등이 제기된 사실과 그에 대한 수용 여부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의 법적 효과,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에 있어서의 고려가 없다.

(3) 그러므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언론사나 정보제공자, 정보의 보도·매개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제청구를 받은 경우 자신이 그 정보를 제공한 자 및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정보의 유통·보관처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액의 과태료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언론매체에 유통·전파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이를 원천으로 하여 변경·가공한 정보에 대하여도 법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이를 심리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44조의6), 이는 그 이용자인 정보의 작성자나 게시자 등에 대

35) 특허법(제126조), 실용신안법(제30조), 저작권법(제123조) 등은 재산권의 성질을 갖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보관처 고지의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4)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유통·보관처를 일일이 거시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그 전부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자동적으로 그 전부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조정·중재 절차 진행 중에 새로 밝혀진 관련 정보의 유통·보관처에 대하여도 제척기간 도과의 불이익 없이 절차를 병합 심리하여 일거에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언론중재위원회의 ADR 기능 강화

(1)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폐지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변하였다. 아마도 이는 보다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배려로 보이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분쟁 해결률이 70%를 상회하는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국가·사회적으로 별 이익이 없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현재 사법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상고법원’의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분쟁 해결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그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는 ADR의 저조한 활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법절차에 의한 분쟁 해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부담, 분쟁 규모의 확대 및 분쟁 후의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언론보도나 정보의 유통·전파에 따른 분쟁을 1차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라는 ADR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큰 이익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거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우며, 인터넷매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관련 정보가 어디에 누구의 지배, 관장하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언론 관련 분쟁의 전문 해결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정보도청구권 등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제수단 외에 신설할 기사의 삭제청구권, 접근차단청구권 등과 관련해서도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2)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중재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임시적 구제조치가 필요한 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적으로 당해 기사의 게시 중지, 삭제, 접근차단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도의 사후적 구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법리상 문제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와 이의신청절차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조정 등 이에 준하는 재판에 의하여 이미 분쟁이 해결되었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또는 직권조정결정에 의하여 해결된 분쟁의 대상인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 그 정보로부터 파생·변형·가공된 정보에 대한 구제절차는 다른 침해적 정보의 구제절차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구제청구가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 절차의 개시 전이라도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곧바로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구 본 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김 경 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 동 규 (중재위원 /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 봉 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윤 성 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언론중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반기면서, 그 실행방안으로 제시된 각론에 대하여 현업 언론 종사자로서의 관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현행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의 자유와 보도를 위한 피해구제수단으로 국내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인터넷 이전의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제라는 점에서 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새로운 언론환경에 맞는 중재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민주사회의 핵심 제도로서 언론 특성을 고려한 법규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지향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언론중재제도는 인터넷의 속성과 기본 지향에 어긋나지 않아야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 매체로서 인터넷의 핵심적 속성은 무제한적인 쌍방향 네트워크이고, 국경을 넘어 이용가능한 글로벌 서비스라는 점이다.

국내 이용자들은 국내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한다. 이 때문에 국내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언론중재 법규에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의 국제적 기준이나 합의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실효성이 있고, 이용자와 산업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는 합리적 법제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언론중재절차를 통해 삭제된 기사에 대해 그 절차와 내용을 부당하다고 여겨,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공유하거나 이를 위해 해외 서비스로의 이전(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선호한다면 언론중재제도와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토론자는 발제문에서 다루고 있는 언론중재제도의 많은 개선과제 중에서 세 가지에 한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발제자가 언론중재 대상의 범위를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의 보도만이 아니라, 인격적 법익이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는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이미 욕설, 모욕,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규를 마련하

고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표현 자유와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조정·중재하는 법률로, 민주사회의 핵심적 장치로서 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스템이다. 이처럼 언론과 그에 관련된 기능에 한정된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확대시켜, 거대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인터넷에서의 표현행위 일반에 대한 중재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이는 광범한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현행 형법과 민법 등으로 포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둘째, 기존의 언론피해구제수단 외에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정보삭제청구권, 접근차단청구권, 검색차단청구권 등의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함이 없고 글로벌 수준에 적합하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발제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광범한 종류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침해정보의 삭제청구권, 접근차단청구권을 제안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인격권에 바탕한 기사삭제판례가 2013년 처음 수립되었지만¹⁾, 대법원은 보도의 비진실성과 비공익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피해자 인격권과 언론자유 간의 법익 형량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엄격화했다.

수년 전부터 언론중재 절차에서 기사 삭제와 수정이 신청인과 피신청 언론사들에 의해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으며 그 사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현행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한정된 언론피해구제수단을 확대해, 현실적으로 광범하게 언론피해구제절차에서 수용되고 있는 ‘기사 삭제’를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청구권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다.

현재 언론중재 과정에서 또는 언론사별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기사 삭제의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언론법제가 견인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공적인 기록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보도와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공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사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삭제 대상이 된 기사를 투명성 보고서나 고충처리인 활동보고서 등의 형태로 기록화하는 게 요구된다.

오보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기사를 수정, 삭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김일성 사망 오보’로 인해 국내 증시가 한때 급락한 일이 있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급사했다는 오보가 증시 폭락이나 급변동을 일으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키거나, 팝스타 자살 오보로 팬들의 동반자살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오보이지만 오보 역시 일단 보도되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사자의 권리 구제 요구로 인해, 오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그 흔적을 없애버리면, 그로 인한 변화나 이후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는 일종의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단 보도된 내용을 추후에 수정,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보수적일 필요가 있으며, 지속되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기사에 피해구제권을 도입할 경우에도 신중한 접근법이 요구된다.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의 ‘스페인신문 및 구글 스페인의 잊혀질 권리’ 판결 또한 ‘부정확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주장에 대해 절충적 태도를 취한 게 특징이다. 즉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색엔진(구글 스페인)에서 청구인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검색결과에 대해서만 링크 삭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언론보도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정보보호법제(GDPR)가 도입하고자 하는 ‘삭제할 권리(Right to Delete)’에서도 예외 영역이다.

오보라고 해도 그 전모가 드러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례로 미국 <뉴욕타임스> 등 권위자들의 오보에 대한 태도도 참조할 만하다. <뉴욕타임스>는 2003년 제이슨 블레이어(Jayson Blair) 기자가 날조, 표절 기사를 써온 것이 뒤늦게 발각돼 신뢰 추락과 대대적 수모를 겪었으나, 해당 날조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보존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사 본문에 ‘편집자 알림’을 통해, 해당 기사가 날조되었음을 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신설을 고려할 ‘기사삭제청구권’은 언론사의 기사를 삭제 및 수정하는 대신, 구글 스페인 판결에서처럼 검색결과 노출의 경우에만 원래 기사로의 링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언론사가 삭제청구의 대상이 되는 오보를 삭제하거나 수정 내용을 첨부하거나 하는 방식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법 조항에서는 ‘검색결과상 원기사로의 링크 삭제’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제자가 제시한 ‘침해정보 접근차단청구권’ 또한 목적하는 바가 해당 정보로 인한 피해의 차단이므로, 인터넷상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편리한 접근성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언론의 애초 보도는 가능한 한 기록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차단을 위해 검색결과에서의 링크 제거를 주요 구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해당 언론사만이 아니라 포털에서 동시에 기사가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중재위의 조정을 통해 ‘검색결과에서의 삭제’ 조정결과가 나오면

포털 뉴스 서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의 원래 기사는 접근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인터넷기사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검색엔진의 기능과 영향력에서 기인하므로,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할 경우 언론사의 원래 보도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언론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피해구제를 위해서 검색엔진과 포털에서 노출되고 이용가능해지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언론 자유를 유지하면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절충적 방안이라고 본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9년 ‘실질적 모호성(Practical Obscurity)’ 개념을 제시해 아날로그 문서 더미와 인덱싱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한 바 있다.²⁾

셋째, 발제자는 침해정보삭제와 접근차단청구권 신설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청구시효배제를 주장했다. 이는 우리 법 체계와 국민 법 감정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인 만큼, 광범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청구시효를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보도 이후 6개월’ 이내로 규정된 피해구제청구시효를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고 이용자들과 언론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효를 없애 무한으로 연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법적 논란을 부를 문제다. 인터넷 환경에서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청구권의 시효를 보도 시점으로 할지, 검색결과 노출 기준으로 할지, 또는 피해자의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그 기준과 함께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요구된다.

2) U.S. Department of Justice v.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489 U.S. 749(1989).

1. 서설

언론매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환경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언론소비의 형태는 신문·잡지 등과 같은 ‘구독식’의 ‘아날로그 형태’에서 인터넷신문·포털뉴스 등과 같은 ‘전송식’의 ‘디지털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말부터 시작된 모바일의 확산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무지막지한 전파성으로 인해, 디지털 형태를 가진 기사가 일단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순간부터는 그 확산에 대한 언론기관의 제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간단하고 저렴한 디지털 제작 방법으로 인하여 기사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잘못된 기사나 허위 정보, 명예훼손 기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였고, 검색엔진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 올라간 디지털 기사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색하여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론기사뿐만 아니라 언론기사에 대한 의견 표명의 주체나 표현 형식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형태에서는 독자의 오프라인상의 의사표명, 전화 등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의견 표명 주체의 폭이 넓어졌으며, 간단한 의견 표명이라도 댓글, SNS 게시,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매우 빠르게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시대적 변화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은 전통적인 2가지 원칙 즉 ‘언론기관의’ + ‘사실적 주장’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국가기관 사이의 관할의 공백을 불러일으켰으며, 인터넷을 불법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의 온상으로 만들었고, 언론기사의 품위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지적하신 발제자 양경승 부장판사님의 발표내용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양경승 부장판사님의 발표내용에 더하여 약간의 소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휴먼(posthuman)’ 시대에 일상화될 로봇기자 등에 의한 언론기사 작성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2. 댓글

발제문에는 “기사댓글이 존재하는 인터넷 공간은 앞서 언급한 언론중재법의 확대 적용 기준인 그 공간의 접근성이나 공개성, 저장된 정보의 계속성과 확대·전파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침해적 댓글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해 왔고, 대법원 판례나 학설상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도 자신이 통제관리하는 인터넷 공간에 유통·존속하는 침해적 정보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댓글을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에 포섭시키자는 내용이며, 이는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을 언론기관의 활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활동 주체를 넓히는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언론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을 인정하자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댓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언론기사의 댓글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겠지만,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언론기사에 대하여 시각적·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댓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언론기사에 대하여 시각적·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댓글입니다.

전자의 예는 특정 기사에 바로 붙어 있는 댓글, 특정 기사에 대하여 같은 언론사 사이트 내의 자유게시판 등에 있는 댓글 등이 있습니다. 후자의 예는 특정 기사에 대하여 다른 인터넷 공간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댓글입니다. 예컨대 페이스북에 특정 기사 링크를 걸어놓고, 그 밑에 기사 내용을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구별은 용이해 보이지만, 네이버 등의 포털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뉴스서비스에 있는 특정 기사를 누군가 자신이 소속된 네이버 카페에 그대로 옮겨놓고 댓글을 다는 경우를 전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후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구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에 포섭되는 댓글의 범위를 전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후자까지 넓게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넓게 해석하여 후자, 즉 특정 기사에 대하여 다른 인터넷 공간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댓글까지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에 포섭시키는 경우라면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한 비평글 전체에서 그 기사의 비중 또는 그 기사와 댓글 사이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포섭시킬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고, 좁게 해석하여 전자의 댓글까지만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에 포섭시키는 경우라면 전자와 후자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왜 전자까지만 포섭시키는 것인지 그 이론적 기반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실적 주장 이외의 표현행위

발제문에는 “사실적 주장, 즉 보도활동 이외의 수단에 의한 법익 침해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법익 침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표현행위를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서 인격적 법익이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보도의 개념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개선하여 “언론이 공공에게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 등으로 개념정의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에 관하여 기존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이라는 틀을 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기관의 업무가 보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점점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한 ‘정보 제공 활동’으로 언론보도의 개념을 정의할 경우 “언론보도”라는 단어의 개념상 범위는 무제한 넓어져서 광고라든지, 컨퍼런스, 전시회 등도 포섭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보도를 단순히 “언론이 공공에게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개념정의하는 것보다는, 언론보도의 수단에 대한 제한을 개념에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보완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검색차단청구권

발제문에는 “새로운 피해구제수단으로서 침해적 정보의 삭제청구권과 접근차단청구권을 언론중재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그 침해적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차단의 방법으로서 검색사업자에 대한 검색차단청구권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제도의 피해구제수단을 확대시켜 검색차단청구권 등을 활용한 접근차단도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중재제도의 피해구제수단을 확대시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검색차단청구권은 유럽사법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게 곤잘레스에 관하

여 현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거의 재산강제매각 기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거 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서의 검색차단을 명령하였기에 기사의 검색차단은 잊혀질 권리의 대표적인 행사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게시 당시는 적법했지만 사후적으로 부적절해진 기사에 대한 조치이지,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기사에 대한 조치가 아닙니다.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기사에 대하여는 이것이 불법정보이므로 그 기사의 원천 삭제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바, 굳이 검색차단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게시 당시는 적법했지만 사후적으로 부적절해진 기사에 대하여 인정할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적법하나 사후적으로 부적절해진 글이 잊혀질 권리의 집중적인 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원래부터 불법적인 글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법행위 관련 법리로 충분히 포섭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게시 당시는 적법했지만 사후적으로 부적절해진 기사의 경우, 이는 자칫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알권리 등과 민감하게 엮일 수 있는 관계로 이러한 기사에 대하여 검색차단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내 부정적 여론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유럽사법재판소 방식의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색차단청구권을 도입할 때는, 검색차단은 실질적으로 기사 삭제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떤 경우에 이 청구권을 도입할지, 그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지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 포스트휴먼시대의 로봇기자의 문제

디지털 시대의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적응도 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류는 포스트휴먼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포스트휴먼이란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로서, 사이보그, 로봇, 개량인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포스트휴먼 사회는 휴먼과 포스트휴먼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로봇기자가 증권이나 스포츠, 날씨 등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외국의 기사를 이미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사람보다 뛰어난 정보분석력을 가진 로봇기자가 사람기자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휴먼 사회에서 로봇은 기자의

역할 일부를 수행할 것이며, 언론사는 사람기자 대신에 24시간 쉬지 않아도 되는 로봇기자를 채용하여 대량으로 기사를 찍어낼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로봇기자가 등장하였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역할이 확대될 것인 이상, 특정 로봇기자가 프로그래밍된 성향이나 오류, 또는 인공지능의 사용에 의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기사나 부정확한 기사를 쓰는 경우 로봇기자를 사용한 언론사의 책임을 어떤 이론적 근거에 따라 인정할 것인지, 로봇기자가 기사를 썼다는 점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지, 피해자가 특정 로봇기자의 폐기나 해당 프로그램의 삭제, 성향 또는 오류의 정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제도는 이러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언론중재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결어

디지털 시대에는 이에 맞는 언론중재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인바, 우선적으로 ‘언론기관의’ + ‘사실적 주장’이라는 고전적 틀을 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의 관할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언론보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검색차단 청구권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섬세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디지털 시대를 이을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한 연구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언론계나 학회 주최 세미나의 제목으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생태계’ 변화다. 이는 최근의 변화가 단순히 특정 언론 환경이나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언론의 생태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를 매개로한 여러 사회 제도나 기구 또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그 변화의 대상, 범위와 내용, 속도 등이다. 언론의 경우 아예 일차적인 개념의 재정의(Redefinition)부터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발제자는 변화하는 환경, 특히 현재의 ‘온라인, 인터넷환경’에 부응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자세하게 제안하고 있다. 첫째, ‘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공간이나 기사댓글란과 같은 게시판(bulletin board) 또는 토론방, 카페, 블로그 등의 공개광장(public forum)’과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과 같은 이른바 전자언론’의 영역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과 둘째, 이러한 전자공간에서 사실적 주장 이외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를 도모하자는 제안, 셋째, 원스톱 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절차의 일회적·유기적 해결 제안, 넷째, 공직선거법상 피해구제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큰 이의 없이 동의한다. 다만, 개선 논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등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침해 표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절차가 있다는 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정책결정을 통해 자율적 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과 언론중재법 간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창구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해 ‘침해 상태의 제거, 장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이 오히려 ‘언론의 표현자유’,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그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포털사의 자율적인 조치

(기사 하단 〈신고하기〉 버튼 등을 통한 민원처리)가 있는데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명예훼손적 기사 댓글 이외의 댓글에 대해서도 댓글말소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담당하게 된다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많은 댓글에 대해 현행과 같은 신속한 처리 기간 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셋째, 발제자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 삭제청구권의 청구기간과 관련된 문제다. 새로운 입법으로 언론사의 과거 기사에 대해 삭제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소급입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동일한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 이외에도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경우, 기사 삭제와 별도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사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원 보도에 대해 정정 또는 반론을 보도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으나, 언론사로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청구라는 비판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 그런 중재 사례 경험도 있었다.

넷째,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즉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언론의 자유’,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언론중재제도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향후 언론중재법을 개선하더라도, 특히 공직자, 공적인 인물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좀 더 확실히 정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는 사실적 주장뿐 아니라 그 사실적 주장의 전파와 의견 표현(논평 등)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사실적 주장에 국한하는 것은 최근의 보도 경향 추세를 감안할 때 재고와 대안 마련의 대상이다. 사진과 영상자료를 첨가한 심층보도 등 이전에 비해 사실과 논평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보도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조정이 되거나 조정대상기사가 남아있는 경우 정정·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반론보도를 이어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정대상기사도 삭제하고 정정·반론보도도 게재하거나 정정·반론보도를 일정 기간 게재한 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예외적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건보도’ 관련 조정신청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집단적 차원의 공격적인 대규모 언론조정신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번 대량신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비용이 무료이고 별도의 수수료도 들지 않아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형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와 같은 다수 신청이 접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 피해구제에 기반을 둔 특정사건에 심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차제에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의 선용은 더욱 권장해야 하지만, 남용과 오용의 경우를 구분해 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의 권위를 지탱하는 두 축은 자유와 그에 합당한 공적 책임에 있다. 자유라는 명분으로 피해를 양산한다면 합당한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10년간 언론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의 근거법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을 바탕으로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피해구제수단과 조정, 중재라는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구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왔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뉴스 생산과 유통 방식이 급변하면서 언론보도 활동의 결과물인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 확산 속도와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 발생은 실시간으로 벌어지는데, 피해구제의 속도는 아날로그 시대와 큰 차이가 없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과연 기존 피해구제수단과 피해구제절차만으로 현재의 언론 보도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발제문의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모색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는 포털에서 일하는 필자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보도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유형과 속도에 대해 법적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낀다. 체감상 실제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언론중재위에 판단을 구하지 않고 피해를 감내하거나 적극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 같다.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구제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해구제수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편 중 하나다.

피해구제 속도의 지체 현상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털어 놓는 가장 큰 불만이다. 디지털 기술기반에서는 뉴스의 소비와 피해가 모두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는 그렇지 못하다. 항간에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LTE 속도로 발생하는데, 피해구제는 PC통신 시절의 전화모뎀 속도에 그친다”는 말이 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속도가 너무 늦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

하나 현재 언론중재법에 언급된 피해구제수단이 실제 피해자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구제수단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디테일해지고 있다. 뉴스가 유통되는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피해구제수단이 다양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포털이 매개한 기사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포털사에 요구해 오는 피해구제 유형은 기사 삭제, 기사 수정(사진 제외), 댓글 삭제, 댓글 차단, 기사배열 제외, 접근 차단, 검색 차단 등 다양하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결과만 살펴봐도 아날로그 시대에는 없던 이와 비슷한 유형의 피해구제 방안이 도출되고 있다.

발제문 내용은 더딘 피해구제 속도와 피해구제 수단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현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어서 크게 공감이 간다. 발제문에 언급된 개선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게시판 등을 통한 댓글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댓글은 보도행위의 결과물인 기사에 속한 부속물로 볼 수 있다. 포털이나 언론사의 경우 온라인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면 댓글 영역도 함께 사라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댓글을 기사의 부속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댓글도 엄연한 개인의 창작물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기사가 삭제될 때 댓글 영역이 함께 사라지지만 개별 댓글을 단 사람의 ‘댓글 모아보기’ 페이지에는 해당 댓글을 그대로 남겨 둔다. 개인의 저작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 댓글의 경우 포털이나 언론사 기사 댓글 영역에 글을 남길 때 게시자의 SNS 서비스(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같은 댓글이 포스팅된다. 만약 댓글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면 같은 글이 존재하는 SNS 영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댓글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댓글은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블라인드 조치까지 이뤄지고 있어 언론중재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제도의 중복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개선방안 중 4번째 사항이다. 조정·중재신청 때 파생된 유사 정보에 대해 특별 판단이나 조정 없이 신속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피해자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전부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 경계가 애매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의무가 특정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해당 보도를 인용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변형된 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자동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피해구제 청구수단을 다양화하자는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는 바이다. 이미 조정·중재 과정에서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없었던 다양한 합의가 도출되고 있어 실제 통용되는 피해구제수단을 명문화하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제자가 제안한 삭제, 접근차단, 검색차단은 언론중재법에 명문화된 피해구제 청구수단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수단이며 앞서 언급한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인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상당한 심리 신청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는 필요하며 그 수단은 접근차단, 검색차단과 같은 방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 일반 게시물에 대해 적용되는 임시조치의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이 보완될 경우 그 수위를 잘 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보도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련해 언론중재법 외에 민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다양한 관련법이 존재하는 만큼 제안된 개선방안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이어질 때 다른 법과의 조화로운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언론중재법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피해구제의 편의성이나 수단의 강화가 언론의 자유를 해칠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제문에 제기된 개선방안 중 상당 부분은 입법화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1.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범위는 방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국한(제2조 제1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란 무엇인가, 보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언론이나 보도 장르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방송법에는 보도를 할 수 있는 사업자와 보도를 할 수 없는 사업자를 구분하고 종편(지상파,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외에는 보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경제TV, CBS와 같은 라디오방송은 유사보도라 하여 규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도 장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JTBC <썰전>이 오락인가 시사인가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인포테인먼트 등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는 장르가 융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장르 구분의 의미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영향력 면에서도 장르 구분의 의미가 있을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tvN의 <여의도 텔레토비>, MBC의 <무릎팍도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뉴스보다도 클 수 있습니다. 미국의 <MTV 뉴스>도 2004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젊은 유권자에게 정치 교육 채널이 된 바 있습니다. 오락의 정치화, 정치의 오락화 속에서 보도보다 오락 프로그램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르 구분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서도 협소한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관간 업무중복을 이유로 언론중재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언론중재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내용을 사후에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언론중재위원

회는 권리침해에 있어 당사자간의 다툼과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있어 정부나 여당 편향적이어서 독립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규제기관에 의한 임시조치 등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언론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아닌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개인의 권리보호와 언론 자유의 조화를 꾀한다는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이 일부 있지만 조직이나 규모 측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사생활, 초상권 등 권리침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률개정 방향으로 인터넷에서의 피해구제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대상에 예능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KBS <승승장구>,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아이돌그룹의 한 멤버의 발언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언론의 의무가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FCC가 그 동안 뉴스 장르를 폭넓게 적용해온 것도 뉴스이건 오락이건 방송사업자에게 사실을 은폐·허위·왜곡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르구분이나 언론이냐 아니냐 형식을 떠나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도, 언론이라는 개념에 국한하기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권리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도 범위를 출판물에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로 확대 적용하는 것처럼 앞으로 언론중재법도 ‘언론’, ‘보도’ 개념에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디어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연성’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도, 언론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권리침해인지 여부를 ‘공연성’ 여부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인터넷공간의 경우 ①‘이메일/메신저’ ②‘게시판, 토론방, 카페, 블로그 등의 공개광장’ ③‘인터넷 언론’ ④‘인터넷 홈페이지나 SNS’로 구분하고 ②③만 언론중재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1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든 지금, 언론사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정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시판보다 영향력 있는 트위터에 의한 권리침해가 더 심각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가능한지 등 공연성 기준으로 판단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향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의 권리침해 양상이 심화되고 다양화될 것을 예상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권리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인터넷에서의 피해 구제 방법이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 합 토 론

박성희(사회자)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모(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대리)

윤성옥 교수님의 토론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송법상 명예훼손 조항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는 규정이고,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구제 측면은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 업무와 중첩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댓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댓글이 기사내용과 관련이 있든 없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댓글이 기사와 무관한 내용일 때 언론사와 ISP의 책임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사는 문제가 없지만 댓글만 문제 있는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문제 있는 경우 기사가 삭제되면 댓글도 나중에 함께 삭제되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분쟁조정 당사자가 언론사나 ISP가 아니라 댓글 작성자가 됐을 경우 실효성 문제를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김경환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셜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2012년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댓글을 작성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굳이 개인정보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댓글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댓글이 작성된 경우라면 언론중재위원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든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댓글 피해자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건수가 68건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댓글이 삭제되기만을 원할 뿐 댓글 작성자

에게 보상을 받는 식의 다른 구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 건수가 68건인 데 비해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신청건은 심의된 것만 연평균 3,800건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삭제만으로도 만족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가 복제되어 전파된 경우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기자가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동일하게 게재한 경우까지 보도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사 일부를 편집하거나 잘라내서 기사에 대한 내용, 혹은 기자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게시물 전체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댓글 영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ISO라든지, 각 온라인신문사업자가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현재 임시조치제도가 사업자에 다소 불편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희(사회자)

댓글 규제에 효용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댓글을 올렸는지 알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소셜계정은 서버가 외국에 있을 경우 계정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모색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나 의견 발표해 주십시오.

강홍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분석실 연구책임자)

오늘 세미나 주제가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인데 여기에 매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말할때 언론을 이야기합니다만, 언론매체라고 하면서 언론과 매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언론의 기능과 매체의 기능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언론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매체의 변화로부터 유도된 것입니다. 언론적 기능과 매체적 기능을 나눠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디어를 통한 뉴스유통경로를 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은 미디어의 속성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으며, 언론이 인터넷 부분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능은 대부분 확인된 정보에 대한 평가, 또는 그것에 대한 결합에 있습니다. 일종의 해석이자, 정보의 재가공입니다. 사실확인도 검색이나 SNS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언론 미디어가 아닙니다. 사실확인도 있어서 SNS 등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기능을 사실확인이라는 것과 연계시키는 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은 과거와 달리 개방적으로 운영됩니다. 트위터를 통해 언론 에이전시와 독자가 상호소통 하는 개방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언론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 기능을 볼 때 공적 공간 내에서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체 기능을 살펴보면,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전파력이나 시간성·공간성에 의해서 언론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조작 부분에서 조작이 해석이라는 부분과 상당히 비슷하고, 창작이라는 것과도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와 관련된 기능을 봤으면 합니다. 인터넷 공간 내에서 매체 기능이 작동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기사가 났을 때 보수집단은 열광하고,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한다면 그 내용은 진보적인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정보가 서로 다른 채널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체 자체는 균일하지도 균질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대단히 비소통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을 얻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도 혹은 시사, 정보 중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양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집단에서는 반드시 정정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정정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안 하는지에 대한 균형이 이뤄져야 할 텐데 문제는 미디어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 대상 기준에 추상적인 개념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가는 게 옳은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하여 판단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기능과 콘텐츠 기능을 나누어 보자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로 완전히 나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두 기능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체적 영향을 받은 언론의 기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한 언론적 개념을 매체적 측면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협

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로서 세미나 주제와 관련한 제 의견을 개진해보았습니다. 이를 하나의 제안으로 보시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사회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콘텐츠 쪽이고 미디어는 매체 쪽인데, 이 둘을 분리해서 보자는 신선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중재위원 / 제주대 통역대학원 교수)

개인적으로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적인 대원칙 같은 것을 고민해봐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새로운 걸 모색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별로 새로운 건 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주제의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과연 저 ‘새로운’에 지속가능함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는지 생각해보았으면 하고, 지속가능한 대원칙 속에서 새로운 것을 조금씩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문기(중재위원 /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발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구본권 소장의 토론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언론의 표현자유 침해 소지를 언급하셨는데, 결국 저희가 발제내용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크게 삭제청구권과 접근차단권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기사삭제청구권은 이를 기반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떠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이 청구권을 통해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차단청구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조정·중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구제할 수 있고, 그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검색차단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포털사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제하는 이유는 사실상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에 보면 임시조치에 대한 규정도 있고 연관검색어에 대한 차단규정도 있고 자동완성검색

에 대한 차단규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보면 정보통신망법에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명예훼손이라든가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내에 검색차단청구권 관련 조항이 포함이 된다면 KISO의 정책규정의 근거가 마련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다 하고 있다, 검색차단을 통해서 사실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일정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유봉석 센터장께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사삭제기능에 의해서 원기사는 이미 삭제가 됐는데 다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그 기사가 복제·전파되었을 때 연관 검색어 기능이나 자동완성 검색 기능을 차단시킴으로써 검색차단청구권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에서 기사삭제청구권을 법안에 포함시키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검색차단청구권이 자연스럽게 도입됨으로써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세미나 발제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재위에서 이를 위해 기사삭제청구권이나 검색차단청구권을 법안에 어떻게 연계시킬지, 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박성희(사회자)

이에 대해 구본권 소장님과 유봉석 센터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본권(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언론중재절차에서 기사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현실로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재부에 따라서, 혹은 중재부에 오기도 전에 근거 없이 인위적으로 언론사와 청구인들 간에 일종의 거래를 기반으로 삭제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지금 언론의 권위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요청하면 삭제해주고 중재위에 온 것도 기사 삭제에 대한 기준이 공식화되지 않다보니 이를 중재부에서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매체 환경을 반영해서 기사삭제청구권의 입법화가 필요하며, 언론이 공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해질 경우 반드시 공적으로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사가 삭제되더라도 다 삭제되어서는 안 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는 보고서에 기록이 된다는지 언론사별로 고충처리보고서에 기록이 된다는지 어떤든 간에 어떤 기사가 삭제됐으면 삭제 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사삭제청

구권이 공식화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종의 기준 마련과 투명성 및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색차단청구권은 기사삭제청구권이 입법화되면 좀 더 쉽게 도입이 될 거라 봅니다. 지금 언론중재법에도 인터넷 기사를 6개월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정보도라든지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일종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원보도가 없어지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도 6개월 동안 서버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이나 검색차단청구권이 도입되어도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것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사항이지만, 검색차단에 있어서 언론의 보도 행위와 검색 행위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도서관에 가면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사의 파일도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도를 없애는 것은 안 되고, 그래도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그것이 연간 검색어라든지 키워드를 통해 너무나 쉽게 검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을 막아주면 됩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소위 ‘잊혀질 권리’ 판결에서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는 유지하라고 하면서도 구글에서 마리오 곤잘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로의 링크는 끊으라고 한 것은 기사와 언론의 공익성 및 기록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차단하고자 하는 절충적이고 균형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봉석(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포털에 관련된 질문도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삭제청구나 검색차단청구가 피해자 구제의 효용을 높이는 측면이라는 것에는 깊이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발제에서 임시조치가 언급되었는데, 임시조치가 되려면 검색차단이나 접근차단, 삭제 등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UCC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바로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30일이라는 임시조치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30일이 지나도 이의를 제기하는 게시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용되는 경우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어서 관련법을 함부로 삭제하지 못하게끔 강화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임시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시조치에 준하는 삭제, 검색차단, 접근차단은 현실적으로 조정이나 중재

의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전재료를 받고 사오는 기사를 내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하게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포털 내부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위 결과를 보면 같은 기사라도 포털 내 DB에서는 삭제하고 언론사의 DB는 그대로 두라는 결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포털 DB에서만 삭제하면 그 기사를 찾아가는 경로가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검색차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상으로 UCC와 기사를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에서 각각 다르게 보고 있는데, 임시조치에 의해서 언론자유가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일반 UCC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다른 상황이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사회자)

기사삭제청구권, 검색차단청구권 등의 도입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우동(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포함해서 올해 초부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을 법안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침해배제청구권에 지금까지 논의된 삭제청구나 검색차단 등을 담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검색사업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시하여 침해적 내용을 검색차단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박성희(사회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욱(국민일보 온라인뉴스부장 / 고충처리인)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사 삭제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는 오보도 있지만 ‘과거의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게 너무 괴롭다’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 창간 때부터 이어져온 ‘소년소녀가장 돕기’라는 시리즈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왔던

당사자들이 20여 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도 자기 이름이 검색되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오면 회사 내 기사 삭제를 위한 시스템이나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충처리인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고 삭제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자 중 한 분이 언론의 기록적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국가제도를 바꿔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봉석 센터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댓글은 기사에 부속돼 있고 기사가 삭제되면 댓글도 자연스럽게 삭제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모자 사건’에서 세 모자의 기자회견에 대한 간단한 2.5매 분량의 간단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기사에 댓글이 20만 개가 달렸습니다. 신문사 서버가 아니라 네이버 서버에 저장된 기사에 댓글이 그렇게 달린 것입니다. 그때 신문사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기사였기 때문에 오보일 가능성도 높았으나, 댓글이 20만 개가 달려서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댓글이 기사에 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기사를 삭제한다면 댓글 20만 개가 갑자기 사라져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큼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성희(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고민이 위원회의 고민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유봉석 센터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석(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구조상 댓글이 기사의 부속물로 보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삭제되면 댓글이 남아있지 않고 삭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댓글을 게시자의 창작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댓글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댓글에 대해 현재의 관행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포털이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기사에 오류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거나 기사에 실수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적 측면에서 보호받을 자의 권리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준해서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댓글 게시자가 자신의 댓글을 모아 볼 수 있는 공간에는 그 댓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적인 의미에서 댓글이 삭제되는 것이며 그 기사의 부속물로서 삭제되는 것이지 그 댓글의 생명력은 개인의 창작물로서는 계속 남아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본권(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고승욱 국민일보 온라인뉴스부장께서 기사 삭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에 온라인뉴스부를 맡으면서 바로 그러한 고민에 부딪혀 신문사 내에서 일종의 자문위원회를 열었고 법률가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보인 경우, 두 번째 최종심에서 무죄나 무혐의 판결 받은 경우, 세 번째 공익성에 비해서 기사 관련자의 프라이버시가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 등에 한해 증빙을 가지고 요청하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사례입니다.

박성희(사회자)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각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거나 의견을 내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토론내용과 관련하여 발언하셨는데, 제가 강조했던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업자 중심의 규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 분쟁조정부가 있지만 현재 조직이나 처리하는 업무가 소극적이고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능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는 전국에 중재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른 것은 당사자 간의 조정과 중재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홍렬 박사께서 공론장 개념을 통해 지금의 언론과 미디어 환경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언론이 균질적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 언론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나 언론의 구분이나 언론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공연성을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서도 그 대상은 사실적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서 사실적 주장에서 확대해서 적용하자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칫 의견이나 논평도 언론중재법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받아들여진다면 표현의 자유나 공론장을 제한하는 경우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성희(사회자)

오늘 발제를 해주신 양경승 교수께서 전체적인 코멘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승(발제자)

김재원 중재위원께서 ‘영원한 패러다임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사회는 변하고 그 중심축은 기술입니다. 강홍렬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과 매체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론은 기사를 만드는 것이고 매체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분리되어 있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중심축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구제절차나 수단으로는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phem글이나 댓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또한 삭제해 해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언론중재법의 조문을 읽어보면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법 역시 불법행위책임 조항이 들어있고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잊혀질 권리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논의자들은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종사자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진실이 아닌 정보와 그 정보가 유통되어 관련자가 피해를 입거나, 장래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경우가 중심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가 공연성이 없는 공간에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나온 의견 중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이 기사 삭제와 관련된 그 동안의 전말을 일괄 기록하는 것도 언론법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성희(사회자)

지금까지 현장의 생생한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세미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박용상(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시대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언론의 자유는 거의 무한정 확장되는 데 반해 그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라는 것은 전혀 개선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간의 간극을 시정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인데, 이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권, 사생활 자유권, 초상권, 성명권 등의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주체가 살아있는 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언제든지 침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법상의 명예회복청구권이라는 것은 보통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보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의 오보에 의한 피해는 그대로 있는데 배상책임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권에 기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명문화하고자 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구본권 소장께서 예전에 만들었다고 하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것이며,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허위로 입증된 사실이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추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공공성에 비해서 사생활의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사삭제청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개하

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있더라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면 그것은 기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검색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기사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한 누구든지 언론사에 들어가서 열람이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구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사삭제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새로운 권리를 만들면 언론사에 부담이 되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사는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언론사가 일반 기사와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따로 보관하면 역사적 기록을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댓글이나 펴글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개별 이용자의 표현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댓글이나 펴글은 주로 언론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 혹은 언론보도를 퍼가서 블로그나 카페 사이트 등에 올린 펴글의 경우에 대해서만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댓글에 대해 유봉석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창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의제설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은 언론이 설정한 의제에 대해 피드백을 다는 행위이므로 댓글 역시 여론형성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미디어로 인한 인격권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댓글도 소위 언론의 여론형성기능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관여해서 보도와 함께 판단해야 피해구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는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댓글은 다른 기관에서 판단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력의 낭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대해 이미 판단을 내렸다면, 위원회가 댓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펴글의 경우는 이를 명확하게 구제해주는 어떠한 기관도 없습니다. 펴글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보도 혹은 중재절차에서 삭제하거나 정정보정으로 한 보도를 퍼간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펴글은 수없이 복제·전파됩니다. 정정보도의 경우 일회적 보도에 그치고, 설령 기사가 삭제되더라도 보도를 퍼간 글이 수없이 많은 경우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을 때 원보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퍼간 기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구제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구제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양경승 판사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박성희 교수님, 그리고 지

정토론에 나서주신 구본권 소장님, 김경환 변호사님, 김동규 교수님, 유봉석 센터장님, 윤성옥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플로어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자 여러분께서 개진해주신 의견들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 과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